

주무관	의정팀장	의회사무국장
		전결 2023. 5. 2.

## 출장복명서

시행 : 의회사무국-2929

- 출장일시 : 2022. 4. 27.(목)
- 출장지 : 목포시 정의로 30, 김창 법률 변호사 사무소
- 출장자 : 6급 김민정, 8급 김민정
- 출장목적 : 공무국외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 문제에 대한 자문
- 출장내용
  - 민법 제674조의 3(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)에 따라 여행자의 귀책 사유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
  - 금액이 부당하고 과다하다면 소송의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음
  - 업무처리를 하는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비용이 과다해 보이지 않고, 아직 비용 등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업체와 조정을 잘해보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고문 변호사님 의견
- 출장자 의견
  - 취소 수수료 관련 항공사에서 발급한 취소수수료 청구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위와 같이 복명합니다.

2023. 5. 2.

복명자 행정8급 김민정

- 붙임 1. 자문내용 1부.  
2. 관련법규 1부. 끝.





### 민법

민법 제398조(배상액의 예정) (법률 제1906호, 2022. 12. 19. 일부개정)

법무부(법무심의관실) 02-2110-3164

- 제398조(배상액의 예정)**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.
-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.
  -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  -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.
  -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674조의3(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)**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[특조헌법 제13조 제 3항]